

“학생들 열의만큼 가르친 보람 커요”

“임시이사 저지”

진도 석교중·진도중 원어민 강사 미주리대 출신 트로이·세라 부부

농어촌 교육 사명감 갖고 일해

후덕한 인심에 고향의 정 느껴



미국 원어민 강사인 트로이·세라 부부가 진도 중학교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의 인기를 끌고 있다.

남편 트로이는 방과 후 화상수업, 인근 학교 순회 수업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성취 의욕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과 취미활동을 함께하거나 집에서 학생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즐겁게 열어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이 같은 열의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물론 지역민들까지 모두 알 정도다. 진도중학교 2학년 윤성희양은 “이를 부부 교사 덕분에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갖게 됐고, 영어 실

력도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트로이씨는 “도서지역으로 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막상 와보니 모든 주민들이 참 따뜻하고 인심이 후덕한 한국의 진정한 정을 느낄 수 있다”면서 “시골 학생들은 도시에 비해 원어민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라씨는 “최소 1년 정도 이 곳에서 더 근무할 계획”이라며 “제자들의 영어실력이 늘어나는 만큼 보람도 쑥쑥 커질 것”이라고 활짝 웃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록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이긴 하지만,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 뿐입니다.”

젊은 교사들도 삶을 한다는 도서 벽지에서 농어촌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20대 외국인 부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미주리대학 출신 원어민 교사 트로이 허킨(Troy Harkin·27)·세라 오레토(Sarah Oreto·여·24) 부부는 1년째 진도 석교중학교와 진도중학교에서 각각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트로이 부부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7년. 같은 대학 선배 사이인 이들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이 원어민 교사를 직업으로 택한 것은 부부가 함께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모국어를 다른 나라 아동들에게 가르친다는 보람 때문이었다.

한국에 입국한 첫 해에는 부부가 광주의 한 유치원에 배치돼 원생들을 가르쳤다.

한국에 입국한 첫 해에는 부부가 광주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한국 땅을 밟았다.

유치원이긴 했지만, 어찌나 학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열의가 높고, 아이들도 열심이던지 ‘영어 열풍’이란 말이 실감났다.

그리고 지난해 모교인 미주리대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교육교류 협력을 맺은 전남도에서 농어촌 원어민 교사를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부부는 상의 끝에 도시에 비해 영어 교육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의 농어촌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보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광주보다 오지이긴 하지만, 빼어난 자연환경과 한국의 옛 문화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데 위안도 삼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도시는 영어 불입식 교육으로 ‘영어 광풍(狂風)’이 불고 있는 데 반해 시골은 아직 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시골 학생들이 쉽게 영어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직접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 사용했다.

특히 부인 세라는 달리기와 각종 체력단련 동작 등을 취하며 반복적인 영어 말하기를 유도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런닝 클럽(Running Club)’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들로부터 최고

않는 사람들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권고했다.

정씨는 2004년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 부이사관(3급) 승진이 통과됐는데 승진 임용되지 않자 광주시를 상대로 “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정씨가 과기 환송심 끝에 승소하자 시가 다시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씨는 소송이 길어져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자 자신의 나이를 실제 생년월일대로 1년 늦추게끔 하는 법원 결정을 받아 “정년 역시 1년 늦춰져야 한다”며 이번 공무원 정년이 지난 11월 5일로 정정했는데도 호적상 1년 전인 1948년으로 돼 있

었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원고를 퇴직시킨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정

년이 지난다면 원고의 소송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했다”며 “대법원의 과기 환송

취지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이 사건을 과기

환송했고 이번 재판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광주시가 불복해

아무런 이익이 없는 소송을 계속

한다면 광주의 시민들은 법원 판결

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권고했다.

정씨는 2004년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 부이사관(3급) 승진이 통과됐는데 승진 임용되지 않자 광주시를 상대로 “시장이 인

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정씨가 과기 환송심 끝에 승소하자 시가 다시 상고해 대법원에 계

류 중이다.

정씨는 소송이 길어져 정년퇴직

을 앞두게 되자 자신의 나이를 실제 생년월일대로 1년 늦추게끔 하는 법원 결정을 받아 “정년 역시 1

년 늦춰져야 한다”며 이번 공무원

정년이 지난 11월 5일로 정정했는데도

호적상 1년 전인 1948년으로 돼 있

었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원고를 퇴직시킨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정

년이 지난다면 원고의 소송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했다”며 “대법원의 과기 환송

취지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이 사건을 과기

환송했고 이번 재판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는데, 광주시가 불복해

아무런 이익이 없는 소송을 계속

한다면 광주의 시민들은 법원 판결

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권고했다.

정씨는 2004년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 부이사관(3급) 승진이 통과됐는데 승진 임용되지 않자 광주시를 상대로 “시장이 인

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정씨가 과기 환송심 끝에 승소하자 시가 다시 상고해 대법원에 계

류 중이다.

정씨는 소송이 길어져 정년퇴직

을 앞두게 되자 자신의 나이를 실제 생년월일대로 1년 늦추게끔 하는 법원 결정을 받아 “정년 역시 1

년 늦춰져야 한다”며 이번 공무원

정년이 지난 11월 5일로 정정했는데도

호적상 1년 전인 1948년으로 돼 있

었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원고를 퇴직시킨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정

년이 지난다면 원고의 소송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했다”며 “대법원의 과기 환송

취지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이 사건을 과기

환송했고 이번 재판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는데, 광주시가 불복해

아무런 이익이 없는 소송을 계속

한다면 광주의 시민들은 법원 판결

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권고했다.

정씨는 2004년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 부이사관(3급) 승진이 통과됐는데 승진 임용되지 않자 광주시를 상대로 “시장이 인

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정씨가 과기 환송심 끝에 승소하자 시가 다시 상고해 대법원에 계

류 중이다.

정씨는 소송이 길어져 정년퇴직

을 앞두게 되자 자신의 나이를 실제 생년월일대로 1년 늦추게끔 하는 법원 결정을 받아 “정년 역시 1

년 늦춰져야 한다”며 이번 공무원

정년이 지난 11월 5일로 정정했는데도

호적상 1년 전인 1948년으로 돼 있

었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원고를 퇴직시킨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정

년이 지난다면 원고의 소송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했다”며 “대법원의 과기 환송

취지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이 사건을 과기

환송했고 이번 재판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는데, 광주시가 불복해

아무런 이익이 없는 소송을 계속

한다면 광주의 시민들은 법원 판결

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권고했다.

정씨는 2004년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 부이사관(3급) 승진이 통과됐는데 승진 임용되지 않자 광주시를 상대로 “시장이 인

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정씨가 과기 환송심 끝에 승소하자 시가 다시 상고해 대법원에 계

류 중이다.

정씨는 소송이 길어져 정년퇴직